

# 라이베리아 (Liberia)

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사회보험 당연적용대상	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	민간부문 근로자, 고위 정부 공직자 및 법원 근로자, 지자체 근로자 및 경찰 등을 포함한 공무원	적용대상 확대
보험료율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3% / 5% / 3%	4% / 7% / 4%	보험료율 인상
보험료 부과 하한 / 상한 소득	없음 / 없음	50 L\$ / 없음	보험료 부과 하한 소득 신설
연금수급 요건	60세 이상, 납부기간 144개월 (1980년 이전 출생만 100개월)	60세 이상, 납부기간 100개월	수급요건 완화
노령연금 지급률	월평균소득 25% + 144개월(1980년 이전 출생만 100개월) 초과 납부기간 10개월 당 1%	월평균소득 25% + 144개월(1980년 이전 출생만 100개월) 초과 납부기간 10개월 당 1%	-
일시금	근로자 보험료 납부총액 + 가산이자	근로자 보험료 납부총액 + 가산이자	-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75년(사회보장)
- 현행법 : 2017년(사회보장)
- ※ 노령 및 장애급여에 등에 관한 사회부조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음

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

## 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
  - 당연적용 : 민간부문 근로자, 고위 정부 공직자 및 법원 근로자, 지자체 근로자 및 경찰 등을 포함한 공무원
  - 임의적용 : 자영자
  - 적용제외 : 임시직 근로자, 가족노동, 가정부, 군인 및 모든 종류의 선박 근로자

## 4

### 재원조달

- 근로자
  - 사회보험 : 월 가입소득의 4%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은 월 50 L\$
  
- 자영자
  - 사회보험 : 월 가입소득의 7%(임의 적용)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은 월 50 L\$
  
- 사용자
  - 사회보험 : 월 임금지급총액의 4%
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소득은 월 50 L\$
  
- 정부
  - 사회보험 : 없음, 사용자로서 기여

## 5

###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 - 노령연금(퇴직연금)
    - 60세 이상이며 보험료 납부기간이 100개월 이상
    - 고용은 중단되어야 함
    - 연금은 65세까지 연기 가능
  - 노령청산금(퇴직보조금)
    - 60세 이상이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100개월 미만인 경우
  
- 장애연금
  - 장애연금(장애연금)
    -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을 판정받아야 하며, 장애 직전 60개월 중 최소 5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
  - 장애청산금(장애보조금)
    -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을 판정받아야 하며, 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 이상이나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  
- 유족연금
  - 유족청산금(유족일시금급여)
    - 사망자가 사회보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거나 사망 전

- 보험료 납입 기간이 50개월 이상
- 수급권 있는 유족은 유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고아이나 없을 경우 피부양부모에게 지급

## 6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연금
  - 노령연금
    -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25% + 144개월 초과 납부기간 10개월 당 1%(1980년 이전 출생자는 100개월 초과 납부기간 10개월 당 1%)
    - 연기연금 :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
  - 노령청산금
    - 근로자 보험료 납부 총액에 가산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장애연금
  - 장애연금
    - 최종 12개월간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25% + 50개월 초과 납부기간 10개월 당 1%
  - 장애일시금
    - 근로자 보험료 납부 총액에 가산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유족연금
  - 유족청산금
    - 유족배우자청산금 : 법령에 명시된 산식과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을 토대로 산정된 일시금을 유족배우자에게 지급
    - 고아청산금 : 법령에 명시된 산식과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을 토대로 산정된 일시금을 각 수급권 있는 고아에게 지급
    - 유족청산금의 합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
## 7 관리운영기관

- 국가사회보장복지공단(National Social Security and Welfare Corporation)
  - 3자 운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  - <http://nasscorp.org.lr>

<2019년 ISSA 자료>